



규정
동원학원 정관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페이지	1/26

목 차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자산과 회계
- 제 3 장 기 관
- 제 4 장 수 익 사 업
- 제 5 장 해 산
- 제 6 장 교 · 직 원
- 제 7 장 직 제
- 제 8 장 보 칙

부 칙

별 표

작성부서	법인사무국	제정일자	1993. 02. 24.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서 명								
일 자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순수한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 이념과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인성교육과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미래사회가 필요로하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동원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동원공업전문대학(교명은 동원대학교이라 한다) <개정 2011.12.6>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6에 둔다. <개정 2011.6.3., 2011.9.20>

제5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8>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8>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자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 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삭제)

제13조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설치) (삭제)

제14조 (위원회의 조직) (삭제)

제15조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16조 (회의) (삭제)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3.3.28., 2018.1.1.>

1. 이사 8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② 상근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3.28>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할 때
2. 관할청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에 의한 이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한 때
4.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5. 이 법인의 중요 추진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6.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7. 이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 구현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제20조의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8>

제20조의4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 또는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경우 이 법인 및 대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6>

③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감사는 단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개방이사의 추천이 없을 경우 이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삭 제>

제20조의5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동원대학교 평의위원회에 둔다. <개정 2011.12.6>

②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제2항 제2호의 추천위원은 이 법인 및 대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6>

④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 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삭제<2011.6.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1.1.>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삭제>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페이지

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
6. 법인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페이지

다.

1. 재적이사 반 수 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회

제31조의2 (대학평의원의 설치)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 (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6>

제31조의3 (평의원의 구성 등) ① 평의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대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6>

1. 교원 5명
2. 직원 4명
3. 학생 1명
4. 대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②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4 (교내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제31조의5 (평의회 의장 등)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6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6.>

제31조의7 (평의원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11.12.6>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8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주식)
3. 기타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동원학원 사업소를 경영한다.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소의 주소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6에 둔다. <개정 2018.1.1.>

제35조 (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1>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개정 2017.3.1.>

제39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2.6. 2017.3.1.>

②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12.6., 2013.3.28. 2017.3.1.>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7.3.1.>

⑤ 대학교 교육기관의 부총장, 처장, 실장 및 부속.부설기관의 장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1.9.20., 2011.12.6>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제39조의2 (교원의 계약제 임용등) ① 정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개정 2013.3.28., 2018.1.1.>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관 제47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교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6>

나. 부교수 : 정관 제47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규정
동원학원 정관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페이지	12/26

2.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육, 연구, 봉사,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조교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임용하되 처우 등은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4.1.1., 2014.3.1.>

제39조의3 (신규채용 등) ①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가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 대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교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본 법인의 임·직원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교·직원이 아닌자로 한다. <개정 2011.12.06>

⑤ 이사장은 대학교 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 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6>

⑥ 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제39조의4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는 2002年 1月 1日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

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 교원은 근무기간이 종료되어(종전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경우의 임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6. 2018.1.1.>

1. 교 수 : 정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4년
4. 삭제<2013.3.28.>

② 이사장은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 교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11.1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대학교의 장은 대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봉사,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산학협력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1.12.6., 2018.1.1.>

⑤ 이사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대학교의 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12.6., 2018.1.1.>

제39조의5 (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39조의6 (겸임교원 등) 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동법 제17조에서 정하는 교원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제2관 신분보장

제4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7.3.1.>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신설 2017.3.1.>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구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4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7.3.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7.3.1.>

제45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

제46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제47조의2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3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8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3.1.>

제49조 (인사위원회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임명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제39조의2의 제1항 제4호를, 정관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의4의 제6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0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8.1.1.>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1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4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5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6조 (교원징계위원회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1.1.>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 (징계의결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제59조의2 (위원의 기피)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의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제60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3.1.>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2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4.24.>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2. 공금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3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4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5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1.9.2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에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6조 (임용) ① 일반직원이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9.2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④ 계약직원의 신분보장과 정년을 제외한 임용, 복무, 보수 등은 총장에게 위임하여 계약에 의한다.<개정 2014.1.1., 2017.3.1.>

제67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제71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2조 (법인조직) ① 동원학원의 중장기계획 및 발전을 위하여 동원학원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법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9.20)

② 법인사무국의 사무국장은 3급 또는 계약직으로 하며, 총무과와 재정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9.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및 업무분장은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0)

제2절 대학교 <개정 2011.12.6>

제73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11.12.6>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1.12.6>
- ③ 대학교에 2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에서 정하는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1.12.6>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4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는 산학협력처, 교무처, 학생취업처, 입학홍보처, 기획처, 사무처, 교목실, 경영지원실을 둔다.<개정 2011.12.6., 2011.12.23., 2014.1.1., 2018.1.1.>

② 산학협력처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홍보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기획처장, 교목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4급 이상으로 보하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경영지원실에는 경영지원실장을 둘 수 있으며 일반직4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3., 2014.1.1., 2014.3.1., 2015.4.24., 2017.3.1., 2018.1.1.>

③ 제1항의 조직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부서장 이외에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4급 이상으로 보한다. <신설 2017.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3.1.>

제74조의2 (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는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6.>

②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이 겸직하거나,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독립 법인격을 갖고 별도 회계로 운영한다.

④ 산학협력단에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 산업기술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1.12.23.>

제74조의3 (특별사업기구) 대학교에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 사업기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1.]


제74조의4 <삭제 2017.3.1.>

제75조 (부속 및 부설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3.03.28., 2014.01.01., 2014.08.01., 2015.04.24.>

② 부속 및 부설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일반직5급 이상으로 겸보하거나,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 및 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3.1.]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제76조 (도서관) ① 도서관에 수서과, 도서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일반직원 5급으로 보하고, 도서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5급 이상의 일반직원 또는 교원을 보한다. <개정 2011.9.20. 2014.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77조 (정원) ①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1.9.20>

제8장 보칙

제78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개정 2011.9.20>

제7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0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규정

동원학원 정관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페이지	23/26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이 동 원	'26. 9. 8	4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435-29
이 사	윤 용 구	'29. 8. 15	4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54-3 건덕빌라 A동 201호
”	이 태 성	'22. 9. 30	2	경기도 미금시 금곡5동 산14번지
”	강 영 규	'24. 12. 31	2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7-2
”	김 명 회	'23. 4. 8	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 12동 83호
”	김 영 관	'25. 9. 9	2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55
”	이 조 영	'27. 10. 20	2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립아파트 6동 1301호
”	이 정 훈	'61. 10. 18	4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71-5
”	최 완 복	'15. 8. 31	2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아파트 113동 401호
감 사	김 경 래	'28. 4. 3	2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02-8 동신아파트 마동 802호
감 사	이 진	'27. 3. 17	1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56-3 철산한신아파트 10동 502호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2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7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6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동원공업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은 이 정 관에 의하여 “동원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임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때까지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의4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3제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3.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3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4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3. (학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학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2007.7.27(사립학교법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결원 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3. (개방이사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덕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사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중인 이사는 임기가 만료될때까지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6일 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동원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동원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문서번호	TWA-A111
			제정일자	1993. 02. 24.
	동원학원 정관		개정일자	2018. 02. 23.
			개정번호	10
		페이지	27/26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74조의3 및 제75조는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6명
일반직계	5명
3 급	1명
5 급	1명
7 급	1명
8 급	1명
9 급	1명
기능직계	1명
9등급계	1명
운전기사보	1명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74명
일반직계	34명
2급	1명
3급	1명
4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12명
8급	3명
9급	1명
기술직계	10명
5급	1명
6급	3명
7급	6명
8급	0명
기능직계	3명
6등급계	1명
운전기사	1명
7등급계	1명
영선기사	1명
8등급계	0명
9등급계	1명
운전기사보	1명
10등급계	0명
경노무원	0명
계약직계	27명
계약직	27명